

서울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4나20057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4나200574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2가단538321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유태훈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익

변론종결 2024. 6. 13.

판결선고 2024. 7. 1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2가단538321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20.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197,886,8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97,886,8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3.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9행, 제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수제, 판사 김복형, 판사 심 담